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2013년 1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말>

민변은 2008년 이후 해마다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법안과 저지되어야 하는 법안 목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발표해 왔습니다.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가 제시한 정책 및 대선공약,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도 민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2013년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입법추진을 예고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안 또는 수정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과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법안들은 민변내 13개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였고, 위원회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의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감시TF가 직접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13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걸쳐 60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은폐 및 축소는 대선결과에 대한 각종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 몰아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 등 신공안정국의 분위기는 민생과 복지, 민주주의의 후퇴와 맞물리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여야간의 정쟁으로 말미암아 정기국회가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각 정당에서는 2013년 정기국회를 위해 중점법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46개 중점처리법안,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55개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여당과 정부는 중점법안들이 기업의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들로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때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변에서 검토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의 상당수 법안들은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업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국가의 기간산업인 gas와 의료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다수 서민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소수의 부자들과 일부 기업을 위한 특혜성 법안들로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저지되어야 하는 법안들입니다. 또한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한 노동, 언론, 여성분야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변에서 제시하는 입법과제는 현재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이번 2013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서 민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 입법저지 및 촉구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 목 차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69) | 11쪽 |
| 학업중단및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77) | 12쪽 |

국방위원회

| |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06) | 14쪽 |
|-----------------------|-----|

국회운영위원회

| |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543) | 15쪽 |
|--------------------------|-----|

기획재정위원회

| | |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1900784) | 17쪽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12) | 18쪽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09) | 19쪽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55) | 20쪽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16) | 21쪽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
|-------------------------------------|-----|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57) | 23쪽 |
|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82) | 24쪽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971) | 27쪽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0265) | 28쪽 |

법제사법위원회

| |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90) | 30쪽 |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905423) | 31쪽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6803) | 33쪽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17) 등 | 34쪽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604) | 37쪽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027) | 40쪽 |
| 차별금지법안 (1902463) | 41쪽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611) | 43쪽 |

보건복지위원회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13) | 46쪽 |
|-----------------------------|-----|

| |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53) | 49쪽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33) | 51쪽 |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1903596) | 53쪽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56) | 55쪽 |
|---------------------------|-----|

안전행정위원회

| |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53) | 57쪽 |
|---------------------------------------|-----|

여성가족위원회

|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890) | 60쪽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6804) | 61쪽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707) 등 | 62쪽 |
| 양육비 관련 법률은 | 63쪽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1903818) | 66쪽 |
|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04964) | 67쪽 |

정무위원회

| | |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602) | 69쪽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699) | 71쪽 |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906272) 등 | 72쪽 |
|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80) | 75쪽 |

환경노동위원회

| |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49) 등 | 76쪽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074) | 78쪽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119)등 | 79쪽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64) | 81쪽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64) | 83쪽 |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900012) 등 | 85쪽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47) | 87쪽 |

2013년 정기국회 민변 60개 핵심법안 선정 취지와 경과

1. 민변의 정기국회 핵심법안 선정활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10개 민생경제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30개 핵심법안을, 2011년에는 50개 핵심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선기간이었던 2012년에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가 제시한 정책 및 대선공약, 관련 법안들에 대해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2013년 정기국회가 개최되면서 여야는 앞 다투어 중점처리법안, 우선처리 법안들을 발표하였다. 법률안이 의결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삶의 구석구석이 규정 받게 된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주요 법률안들에 대한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여야간의 정쟁으로 그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공권력감시 및 사법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인권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하면서 매년도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통과해야 할 촉구법률안 또는 수정 촉구법률안,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악법들로 평가되어 입법되어서는 안될 법률안들을 반대법률안들로 선정하여 이를 발표하는 것이다.

2. 핵심법안 선정 경과와 선정기준

민변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 의견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2013년 19대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인 정부안, 의원발의안과 2013. 8. 28.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9월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중점처리 법안 126건」, 2013. 9. 30.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발표한 '정기국회 1차 중점추진 11대 법안, 21대 입법과제'를 검토하였다.

각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 13개 분야별 위원회와 2개의 TF에서 검토하였으며 최종 7개 위원회(노동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사법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교육청소년 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와 2개의 TF(민영화반대TF, 입법감시TF)에서 의견을 정리하였다.

민변은 해당법안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에 미칠 영향과 쟁점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안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목록과 같이 13개 상임위원회 걸쳐 60개 법안에 대해 입법촉구 또는 수정촉구, 그리고 입법반대 의견을 정리하게 되었다.

3. 향후 활동 계획

민변은 본 의견서에 기재된 법안들에 관하여 입법촉구 또는 입법반대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각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등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2)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면담 및 설득을 진행할 것이며, (3)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체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성취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을 저지하고 민생과 인권의 전진을 위한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 의견 목록

| 소관 상임위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민변 의견 |
|---------------------------------------|--|------------------|-------------|----------|
|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69) | 2012. 10. 9. | 정부 | 입법 반대 |
| | 학업중단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77) | 2013. 3. 20. | 김희정 (새) | 입법 반대 |
| 국 방 위 원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06) | 2012. 11. 27. | 한기호 (새) | 입법 적극 반대 |
| 국 회 운 영 위 원 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543) | 2013. 8. 26. | 권성동 (새) | 입법 반대 |
| 기 획 재 정 위 원 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1900784) | 2012. 7. 20. | 정부 | 입법 반대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12) | 2013. 4. 5. | 나성린 (새) | 입법 반대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09) | 2013. 4. 5. | 나성린 (새) | 입법 반대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55) | 2013. 7. 2. | 안중범 (새) | 입법 반대 |
|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1904016) | 2013. 3. 8. | 이한성 (새) | 입법 반대 |
|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원 위 원 회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57) | 2012. 10. 22. | 정부 | 입법 반대 |
|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82) | 2013. 7. 16. | 김재원 (새) | 입법 반대 |
| 미 래 창 조 과 학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971) | 2012. 12. 6. | 정청래 (민) | 입법 촉구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265) | 2012. 6. 22. | 박영선 (민) | 입법 촉구 |
|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90) | 2013. 1. 23. | 남윤인순 (민) | 수정입법 촉구 |
|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13. | 서기호 | 입법 촉구 |

| | | | | |
|---------------------|---|------------------|-------------|------------------|
| | (1905423) | 6. 12. | (정) |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6803) | 2013. 9. 12. | 남윤인순 (민) | 입법 적극 촉구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17) | 2013. 1. 14. | 문정림 (새) | 입법 촉구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90) | 2013. 3. 21. | 이명수 (새) | 입법 반대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62) | 2013. 6. 7. | 함진규 (새) | 입법 적극 촉구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94) | 2013. 7.22. | 최민희 (민) | 입법 촉구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86) | 2013. 8. 6. | 홍문중 (새) | 입법 반대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10) | 2013. 8. 30. | 유승희 (민) | 입법 촉구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61) | 2013. 9. 3. | 김영환 (민) | 입법 반대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604) | 2012. 11. 15. | 서영교 (민) | 입법 촉구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027) | 2012. 5. 30. | 박영선 (민) | 입법 촉구 |
| | 차별금지법안 (1902463) | 2012. 11. 6. | 김재연 (진) | 보완 후 입법 추진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611) | 2012. 11. 15. | 서영교 (민) | 입법 촉구 |
|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13) | 2013. 5. 24. | 유재중 (새) | 입법 반대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53) | 2013. 1. 18. | 백재현 (민) | 입법 적극 반대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33) | 2013. 5. 31. | 정부 | 일부 찬성 / 일부 반대 |
|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3. | 정부 | 입법 반대 |

| | | | | |
|-------------------|---|------------------|-------------|------------------|
| | (1903596) | 2. 4. | | |
| 산업통 상자원 위원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56) | 2013. 4. 9. | 김한표 (새) | 입법 반대 |
| 안전행 정위원 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53) | 2013. 10. 11. | 진선미 (민) | 입법 촉구 |
| 여성가 족위원 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890) | 2013. 5. 9. | 남윤인순 (민) | 보완 후 입법 적극 촉구 |
| |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 (1900416) | 2012. 7. 2. | 우윤근 (민) | 입법 촉구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6804) | 2013. 9. 12. | 남윤인순 (민) | 입법 촉구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707) | 2013. 4. 29. | 전정희 (민) | 입법 촉구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498) | 2013. 6. 14. | 류지영 (새) | 입법 촉구 |
| | 양육비선지급법안 (1900285) | 2012. 6. 22. | 김상희 (민) | 입법 촉구 |
| |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01664) | 2012. 9. 7. | 서영교 (민) | 입법 촉구 |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1903818) | 2013. 2. 21. | 민현주 (새) | 입법 반대 |
| |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04964) | 2013. 5. 14. | 남윤인순 (민) | 입법 촉구 |
| 정무위 원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602) | 2012. 11. 15. | 서영교 (민) | 입법 촉구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699) | 2013. 9. 5. | 박대동 (새) | 입법 반대 |
|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906272) | 2013. 8. 5. | 정부 | 입법 반대 |
|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 2013. | 이상민 | 입법 촉구 |

| | | | | |
|-----------------------------|---|------------------|------------|--------------------|
| | 방지법안 (1905164) | 5. 28. | (민) | |
|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905098) | 2013. 5. 24. | 김영주 (민) | 입법 촉구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80) | 2013. 5. 23. | 여상규 (새) | 입법 반대 |
| 환경 에 의 한 노 력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49) | 2013. 5. 31. | 김성태 (새) | 입법 반대 및 수정입법 촉구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44) | 2012. 9. 4. | 이완영 (새) | 입법 반대 및 수정입법 촉구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074) | 2012. 12. 11. | 신의진 (새) | 입법 적극 반대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119) | 2013. 5. 24. | 한명숙 (민) | 보완 후 입법 추진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67) | 2013. 9. 10. | 노웅래 (민) | 보완 후 입법 추진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117) | 2013. 10. 2. | 김광진 (민) | 보완 후 입법 추진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83) | 2013. 2. 13. | 오제세 (민) | 보완 후 입법 추진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64) | 2012. 7. 3. | 심상정 (정) | 수정입법 촉구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64) | 2012. 7. 3. | 심상정 (정) | 수정입법 촉구 |
|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900012) | 2012. 5. 30. | 이한구 (새) | 입법 반대 |
|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901435) | 2012. 8. 30. | 안효대 (새) | 입법 반대 |
| |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47) | 2012. 7. 12. | 은수미 (민) | 수정입법 촉구 |

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69) | 2012. 10. 9. | 정부 |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 허용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문제점

-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3호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호텔 등의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 내에 호텔 등의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 관광 진흥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교육환경, 특히 청소년의 교육 환경보다 우선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2012. 6. 28. 대법원 2012아35 결정)가 있고,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건물소유자 내지 여관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384)
- 일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위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2. 학업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77) | 2013. 3. 20. | 김희정 (새) | 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복교,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관계 지원, 적성 및 진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안 제9조). 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법률안 제11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의 정보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은 물론, 여러 정보가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임.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425 (병합) 전원재판부(NEIS 현재 결정)참조)
- 따라서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보의 처리 시 청소년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나, 수집된 정보의 관리책임, 활용범위, 보관기간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책 마련이라는 포괄적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또한 법률안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 7. 11.자로 유사한 취지의 결정문을 낸바 있음.
- 법률안은 지원 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설정하면서, 지원내용으로는 “학업복귀프로그

램”을 중심에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과 유형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위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에 대하여 낙오자, 부적응자, 예비범죄자라는 낙인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법률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의 행정편의적 법률안이다. 즉 현재 몇 개 지자체는 제대로 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별개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면 사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법률 제정을 서두르기에 앞서, 이 법률안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물론, 현행 「청소년 복지지원법」, 교육 관련법 등의 개정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헌법 합치적이고 인권친화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II. 국방위원회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06) | 2012. 11. 27. | 한기호 (새) | <p>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안 제74조의2제2항).</p> <p>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상한을 정함(안 제74조의2제3항).</p> <p>다.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74조의2제5항).</p> |

2) 검토의견: 입법 적극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군 가산점 제도 자체가 성차별적 제도로 위헌이며,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든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점 혜택을 받는 대상을 20%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제대군인의 극소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제도임.
-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할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현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절대다수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어서 위헌성이 판명된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할 아무런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연구팀)

Ⅲ. 국회운영위원회

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543) | 2013. 8. 26. | 권성동 (새) | <p>가.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 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 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 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p> <p>나. 임명동의안 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p> <p>다.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안 제6조제2항).</p> <p>라. 증인 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p> <p>마.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p> <p>바.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p>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인사청문회는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기관의 수장으로 하여금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절차의 필요성, 청문회라는 객관적 검증절차를 통해 국민에 의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 및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음.

-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은 물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에 그 핵심이 있음. 그 동안 공직 후보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편법증여 등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인바,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필요하고도 절실한 덕목이 도덕성임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거로 해야 하는 인사검증임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가 요청된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검증 할 수 있는 체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인사 실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위 법안은 현행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사청문회법 제14조 제2항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 청문회 의결사항을 비공개 의무화로 법제화 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음.
- 위 법안과 같이 윤리성 심사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사권자의 지명과 관련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현 시점에서는 자칫하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음. 따라서 위 법안은 지지되어야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IV. 기획재정위원회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900784) | 2012. 7. 20. | 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 근거마련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이 법률안은 제18대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였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된 것을 다시 제출한 것이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률안 제1조 참조)
-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시행중인 ‘산업발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산업발전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엇보다 가장 문제인 것은 제2조 서비스산업의 정의규정에서 ‘의료’를 삭제하고,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전부 포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하였다는 점임.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의 포괄위임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기존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회록을 살펴보아도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함.
- 결국 본 법률안으로 인하여 의료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우려가 심히 중대하고, 기존의 산업발전법으로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법안은 입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폐지)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12) | 2013. 4. 5. | 나성린 (새)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내용.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이 법률안은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임.
- 이 법률안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목표로 한 4.1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음. 입법화의 주된 근거는 ▶도입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지만, 현재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소비감소 부동산 연관 산업 침체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하지만 ▶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증과를 폐지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고¹⁾ ▶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필요할 정도로 경착륙할 상황이 아니며²⁾, ▶ 폐지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다시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통제와 같은 공적 의무를 부담한다면 양

1) 소득세법은 2008. 12. 26.부터 2013. 12. 31.까지 이 법률안과 같이 양도세 증과를 유예하고 있으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2)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 급격한 하락은 없으며, 수도권의 하락도 완만해 경착륙을 우려할 정도가 아님.

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³⁾ ▶ 국민 여론도 폐지 반대가 높고⁴⁾ ▶ 폐지할 경우 다주택자가 증가해 월세화를 가속시키고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으므로⁵⁾ 이 법률안은 문제점이 심각해 적극 저지해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부동산팀)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09) | 2013. 4. 5. | 나성린 (새) | 법인 보유 비사업 토지에 대해 현행 중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폐지하려는 내용의 법안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 3)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그 대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법상 최소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공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동법 제27조, 동법 제20조 제2항).
- 4)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 2. 6.~15.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9.7%로 찬성(40.3%)보다 더 많았다
- 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임연선;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중략) 시세 차익 대신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소형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켜 서민들의 자가 구입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수도 있다”’

-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한 추가과세 제도 폐지를 할 정도로 투기행위가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리고 첫째,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상당 부분은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적 소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동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둘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토지거래는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거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셋째, 동 법안은 비사업 토지를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조치로서 찬성할 수 없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부동산팀)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55) | 2013. 7. 2. | 안종범 (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 비상장 주식 교환으로 실제로 현금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벤처기업 등을 매각한 자금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투자한 경우에 교환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직접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벤처기업 등을 합병하여 신기술을 취득하는 합병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므로 이에 신기술 취득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형 합병을 촉진하려는 것임.

- 창조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한 자금의 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재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임.
- 이에 신기술 취득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형 합병을 촉진하고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 전략적 제휴 목적의 비상장 주식 교환으로 실제로 현금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벤처기업 등을 매각한 자금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투자한 경우에 교환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한 자금의 회수부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 등에 재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신설).
- 그러나 조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은 결국 국가의 세수누수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자에게까지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봄.
- 이 법안과 같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은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이므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도 있으나, 중소기업 정책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은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문제임. 이 법안을 통해 굳이 세제 지원을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16) | 2013. 3. 8. | 이한성 (새) |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연소득 5000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 6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개인이 스스로 미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1조의15 신설).
- 개정안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연소득 5000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 6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그러나 이 법안은 2010년에도 도입하려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제도임.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수가 아예 비과세 해당자임. 이에 실효성보다는 생색내기에 가깝다고 보임.
- 저소득층 근로자나 사업자가 장기 10년 이상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오히려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V.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57) | 2012. 10.22. | 정부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현재(2013. 7.)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서 운영중인 곳은 김포, 보령 등 14곳이고, 개발 중인 곳은 제부도, 속초 등 8곳이며, 개발계획 중인 곳은 완도, 강정 등 24곳임.⁶⁾
- 박근혜 정부는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을 국정과제 중 하나(인수위 국정과제 13번)로 정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마리나 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연계형 R&D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로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3. 8. 29. 마리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인천, 군산, 여수, 창원 등 전국 6개 지역에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음.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23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임.
- 본 개정안은 위와 같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2)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3)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

6) 출처: 대한마리나산업진흥회 (<http://www.kcomia.or.kr/xe/new>)

로 하고 있음.

- 그러나 1)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법적 근거인 공유수면매립법 등은 매립 결정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매립 완료 후에도 용도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반환경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이에 타 법률에 의한 의제 조항들을 삭제하여 공유수면매립시 환경적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의제조항은 마리나 항만 조성이라는 산업적 이익을 환경보존의 가치보다 우위에 둔 것으로서 적절치 않음.
- 또한 2) 본 개정안의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취지와는 달리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되면서 선부른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본 법 제2조 제4호에 의해 주거시설 건설이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에 해당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산업단지로서의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에도 없는 특혜로서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마리나 산업은 고급해양레저스포츠로서 마리나항만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자들은 일정 정도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거시설 특혜는 오히려 부자를 위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시설을 마리나항만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끝으로 3)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민간투자자가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혜택에 더하여 하천법상의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도 감면을 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TF

2.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82) | 2013. 7. 16. | 김재원 (새) | 동북아시아에서의 크루즈 시장이 확대되고, 크루즈 여객과 선박으로 인한 높은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많은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 17번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와 81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한 내용으로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위와 같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됨.
- 본 법률안은 1) 크루즈의 정의, 2)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외국적 크루즈 유치 확대를 위한 보조, 4) 크루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각 법률의 특례 규정, 5) 크루즈 전문인력의 양성, 6) 크루즈산업 협회의 설립, 7) 크루즈산업을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4)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 법률의 특례 중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선상 카지노업을 허가하였다는 점임.
- 그 외에도 항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에 드는 비용은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나 본 법률안은 이를 배제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사업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 모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본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와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감면 혜택도 부여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본 법률안은 외국적 크루즈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 크루즈사업자에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 크루즈 사업자에게 오히려 국가 예산을 이용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결국 본 법률안은 크루즈 산업 육성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카지노사업을 허가하고, 공유재산 및 국가예산을 공여하며, 조세감면혜택까지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임.
- 이는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것인지 정밀한 검토 없이 사행성 사업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TF

VI.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971) | 2012. 12. 6. | 정청래 (민) | 가. 제명을 언론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언론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함 라.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언론중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에 맞게 언론분쟁조정기구로서 명칭을 변경함.
- 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일정량 할당함으로써 언론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언론피해구제의 현실화가 기대됨.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악의적 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한 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손해액 인정 자체가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므로 현실적인 점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265) | 2012. 6. 22. | 박영선 (민) |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70조제1항). 나.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70조제2항). 다. 허위사실의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인 또는 공직자로서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70조제3항).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박영선의원의 발의안 내용은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친고죄 전환,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구체화로 볼 수 있음.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의 처벌 악용 사례를 볼 때 폐지가 타당함.
- 다음으로 친고죄 전환의 경우도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화하고 공인의 개념을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법안에서 명시하는 것 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판단 및 법원의 판례를 통해 체계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부분은 적극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는 형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형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입법 촉구가 필요함.

- 위법성 조각사유 중 공인의 개념을 직접 명시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박영선 의원 발의안은 ‘공인’의 개념을 ‘당사자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당사자의 지명도에 비추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인’의 개념을 법안에서 명시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VII. 법제사법위원회

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90) | 2013. 1. 23 | 남윤인 순 (민) | 군형법상 추행죄에 있어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의 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 |

2) 검토의견 :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군형법」은 군대 내 이성 군인 간, 동성 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 군형법 상 동성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군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를 미칠 우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군형법 제92조의 6은 막연한 동성애혐오(homophobia)와 편견에 기초한 것임. 또한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동성애를 수십 년 전에 비범죄화하였거나 현재 범죄화하고 있지 않은 국제인권법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 2012년 UN은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군형법상 추행죄의 폐지를 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음.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음.
-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되더라도 군대 내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처벌 가능함.
-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2.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905423) | 2013. 6. 12. | 서기호 (정) | <p>가. 이 법은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p> <p>다. 국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구성원이 3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추천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안 제4조).</p> <p>라. 특별검사보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p> <p>마. 검찰관은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0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p> <p>바.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p> <p>사.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p> <p>아.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도록</p> |

| | | | |
|--|--|--|---|
| | | | <p>함(안 제17조).</p> <p>자. 고소·고발인 등이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p> |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상설특검은 기존 11차례의 사안별 특별검사제가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즉, 기존의 검찰시스템과 특별검사제로는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부패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대통령 공약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여야 지도부가 이미 상반기내 처리를 합의한 사항이기도 함.
- 기존의 특별검사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수동적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서 사건의 중대성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못한 채 장시간 정쟁의 대상이 되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음. 게다가 입법으로 수사의 대상이 특정되고, 수사진도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한시적으로 구성, 활동하므로 이러한 기존의 형태로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상설특검은 특검의 발전 형태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여 운용해야 할 것임. 또한 반부패 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경유착,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하여 관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상설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함. 단순히 수동적으로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수사를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상설특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으므로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상설특검이 정치적으로 다수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수당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치적 소수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수사요청 개시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로 하여금 상설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4대강 사건, NLL 사건 등은 현재의 검찰수사로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법무부장관을 통한 수사방해와 외압 논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상설특검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한 상태임.
- 결론적으로 상설특검은 명실상부한 반부패기구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친족

등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하여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할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임.

- 이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관철해야 하고, 그 내용은 제도특검이 아닌 기구특검의 독립적이고 상설 형태의 기구여야 함.

4)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6803) | 2013. 9.12. | 남윤인 순 (민) | 성매수대상자를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을 현행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함 |

2) 검토의견: 입법 적극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으로 성별불평등의 문제이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임. 또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해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소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로 한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 행위자를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즉 ‘성매수자’로 규정하고 그 상대방이 된 자는 ‘성매수 대상자’로 규정하여 처벌 규정을 없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달성하고자 함.
-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원칙으로 하여 현행 법 2장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관련 규정들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로 바꾸고, 종전 성

매매피해자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성매수 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실상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보호처분 관련 규정(제3장 보호사건)을 전면 삭제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된 것으로 보임.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변경하여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성착취이자 성폭력임을 확인시키고 이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제1조 목적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 등).
- 성매수 개념표지에서 낙인효과 일으키는 차별적 용어인 ‘불특정인을 상대로’를 삭제하고, 현행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을 사는 행위”와 같은 정도로 개정하여 법적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있음.
- 성매수 알선 등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적용가능하나 일선에서 처벌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행위들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한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력을 높일 수 있고(2조 제2항 제1호),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망 및 전자매체를 통해 범망을 피해 날로 다변화되는 신종 알선 광고 행위 등을 신설하여 입법의 공백 해결(위 1호 마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불법원인급여인 선불금이 민사 실무에서는 무효인 채권이면서도 형사 실무에서는 사기죄로 처벌되어 여성들이 착취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선불금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규정 신설(제11조 제2항)하고, 선불금에 대한 채권추심 금지 규정 신설(제11조 제5항)하여 선불금으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성매매방지팀)

4.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17) | 2013. 1.14. | 문정림 (새) |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물치료의 내용,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도록 하고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사실을 청구서 및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5년 이상 장기 복역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범위험성 등을 다시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

| | | | |
|---|----------------|------------|--|
| | | | 가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함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90) | 2013. 3.21. | 이명수 (새) |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62) | 2013. 6. 7. | 함진규 (새) | 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험이나 취향, 품행 등에 대한 신문 금지 및 그에 관한 내용의 증거능력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94) | 2013. 7.22. | 최민희 (민) | 특수강도 후 강간을 당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간 후 특수강도를 당한 경우에도 특수강도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 신설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86) | 2013. 8. 6. | 홍문종 (새) |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상향조정(강간에 대하여는 무기또는 20년 이상의 징역, 강간치사에 대하여 사형, 무기, 20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10) | 2013. 8.30. | 유승희 (민)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방청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61) | 2013. 9. 3. | 김영환 (민)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에 대하여는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2) 검토의견 및 주요검토내용

가. 의안번호 1903317(문정립 의원): 입법 촉구

- 주요내용: 형집행 종료시 재범위험성 다시 판단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 개선안
-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나,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제도는 필요한 제도이고, 특히 개정안은 가장 문제로 지적된 강제적 치료명령 부분을 개선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있을 때에만 검사가 치료명령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의 여부를 신청 부분에 넣을지 법원의 치료명령 부분에 넣을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겠으나), 석방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범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음.

나. 의안번호 1904190(이명수 의원): 입법 반대

- 주요내용: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은 법원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다른 범죄와의 형벌 균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한지 의문임.

다. 의안번호 1905362(함진규 의원): 입법 적극 촉구

- 주요내용: 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험이나 취향, 품행 등에 대한 신문의 금지 및 그에 관한 내용의 증거능력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욕적인 신문으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으므로, 위와 같은 성적 사생활에 대한 신문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신문을 금지하는 범위 및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증거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규정(제 50조 제2항 제3호)은 변호인의 방어권 침해가 되거나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라. 의안번호 1906094(최민희 의원): 입법 촉구

- 주요내용: 특수강도 후 강간을 당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간 후 특수강도를 당한 경우에도 특수강도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 신설.
- 그간 특수강도 후 강간한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으로 처벌하면서, 강간 후에 특수강도를 행한 경우에는 강간과 강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 행위의 선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여 불균형하다는 비판이 있었음.(강간 후 강도하는 행위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접촉하여 발생하므로 그 위험성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마. 의안번호 1906286(홍문종 의원): 입법 반대

- 주요내용: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상향조정
- 아동성범죄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율도 높아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개정안은 형량을 극단적으로 높인 것임(강간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 강간 처사에 대하여 사형, 무기, 20년 이상의 징역). 이는 형량의 과잉이라고 보여짐. 살인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처럼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또한 이처럼 형을 높일 경우 재판부가 유죄 인정에 극히 신중해져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음.

바. 의안번호 1906610(유승희 의원): 입법 촉구

-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를 통해 방청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재판과정을 방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음(실무상 가해자 가족과 마주치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 방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 스웨덴의 경우 이미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사. 의안번호 1906661(김영환 의원): 입법 반대

- 주요내용: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에 대하여는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아동성범죄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율도 높아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음. 다만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형은 지금까지 우리 법상에 도입된 적이 없는 형이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에 대해서만 논의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3)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폭력방지팀)

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604) | 2012. 11.15. | 서영교 (민) | 가. 이자의 최고한도 제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한도는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 |

| | | |
|--|--|--|
| | | <p>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p> <p>나. 이자약정 또는 소비대차약정의 전부 무효</p> <p>1)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전단).</p> <p>2) 나아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자약정뿐 아니라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하여 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후단).</p> <p>3) 한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일부무효)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의 변제충당에 관해 규정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필요해지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가 안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제4항).</p> <p>다. 적용범위의 전면적 확대</p> <p>대부업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한금리를 대부업체의 제한금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금리를 인정할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7조).</p> <p>라.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p> <p>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제2항).</p> <p>2) 이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p> |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우리나라 대부업법은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중에서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을 외국자본의 약탈시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등록대부업자의 감소추세 및 일본계 대부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에서 보듯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특혜금리는 더 이상 자금용 시장의 양성화 기능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자에 게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금리를 적용함.
- 한편 이자제한법으로 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하더라도 실제의 대부거래에서는 제한이율을 넘는 고리대가 횡행하고 있음. 현행 이자제한법의 규정으로는 제한이율을 넘는 고리대의 경우에도 제한이율 범위까지는 합법적인 이자로 인정됨. 즉, 이자율 제한을 안 지키는 대부업자의 경우, 불법고리대를 받아 낼 수 있다면 이익이 되고, 불법고리대가 문제가 되더라도 합법적인 제한금리 수준까지는 이자를 받아 낼 수 있으므로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별로 손해가 없음. 이런 구조에서는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고리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넘는 고리대의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함. 고리대의 수준이 제한이율의 2배를 넘는 고리약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리대 약정은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자약정뿐 아니라 원본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하고 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 아니라 원본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함.
- 이러한 민사적 방어권을 채무자에게 주면, 불법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는 원본을 잃게 될 법률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약탈행위를 계속 시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 이러한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고리대 문제를 더 이상 자금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을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팀)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027) | 2012. 5. 30. | 박영선 (민) |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인정 하고, 계약 갱신시 보증금·차임 인상률을 5% 이내로 제 한함.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 근래 몇 년간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른 주택매매 대기수요의 증가, 도심재생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증가,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 동향은 여러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바뀌기 어렵고, 도심재생사업의 경우 이주수요를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전세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존속을 지금보다 장기간으로 보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차임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 박영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게 하고,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고자 하였음.

- 갱신거절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2기분 차임 연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일반조항으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보증금,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보증금 또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하여(강행규정)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부동산팀)

7. 차별금지법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차별금지법안 (1902463) | 2012. 11. 6. | 김재연 (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2) 검토의견 : 보완 후 입법 추진

3) 주요 검토내용

-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체법으로서, 차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차별예방 및 시정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상위법이자 준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포괄적 차

별금지법의 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

-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들 또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음.
-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차별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을 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수행이 시급한 실정임.
- 19대 국회에서는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며(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2463), 민주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3693), 민주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3793)}, 정부 또한 올해 초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를 수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의원 발의된 3개의 차별금지법안 중 김한길,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안은 2013. 4.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사상·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문제 삼은 일부 보수 단체 등의 반헌법적·반인권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혀 철회되기에 이르렀음. 이러한 법률안 철회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평등원칙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2013. 11. 현재 정부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임.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평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① 차별의 포괄적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제시

- 차별금지법이 차별시정 및 예방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행위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등을 차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통용되고 있는 차별의 개념을 확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금지되는 차별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차별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에서 분리되고 고립된 사회적 소수자 집단, 오랜 기간 동안 차별을 받아온 집단,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기 힘든 집단들에 대해서는 현실에서의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예컨대, 그동안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경우,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대표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차별금지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임.

②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의 도입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경우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고용관련 차별사건에서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등 피해자를 위한 소송법상의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함. 또한 법원의 적극적 판결 권한,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차별행위의 효과적인 시정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야 함.

③ 국가의 차별시정의무의 명문화, 실질화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명문화하여 국가기관 등이 차별시정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목표 아래 구체적인 차별시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은 위 내용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위 법률안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국가인권위원회 2006. 7. 24.자 결정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그 이후 변화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차별의 문제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차별피해자의 지원 및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정에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611) | 2012. 11.15. | 서영교 (민) | 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2호, 제3호). 나.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제6호).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 |

| | | |
|--|--|---|
| | | <p>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4호).</p> <p>라.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을 뿐,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조의2, 제17조 제1항 제2호).</p> |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의 채권추심을 규율 하던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서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이었고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법 채권추심 관련규정에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반복적 괴롭힘에 대한 입증 이 쉽지 않음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채권추심자가 배우자 등에 대한 대리변제를 강요하거나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변제요구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채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방문 빚 독촉과 대리변제 강요행위가 완전히 일상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되었음.
- 따라서 현행법의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법률의 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채권추심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채권추심이 아직 만연해 있고,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심리적 위축 속에서 채무자가 강압적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일본의 예에 따라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채무자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큼.

- 이에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전문 채권추심업자 등에게 추심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채무자도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 가계부채가 실제 1,000조를 초과하여 급증한 상황에서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등의 문제가 민생대책수립의 핵심현안으로 부상되었는바, 단순히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라는 기능적 관점이 아닌, 인권침해의 방지 및 서민보호를 위한 금융안전망의 관점에서 위 개정안의 통과를 제안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팀)

VIII. 보건복지위원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13) | 2013. 5.24. | 유재중 (새) | <p>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의 급여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되, 급여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2항).</p> <p>나.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p> <p>다. 개별급여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별로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특례 규정인 제2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안 제5조 및 제14조의2).</p> <p>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2).</p> <p>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2항).</p> <p>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급여의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2조).</p> <p>아.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p> <p>자. 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 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및 제16조).</p> <p>차.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자활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p> <p>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급여의 종</p> |

| | | |
|--|--|---|
| | | <p>류별 선정기준의 결정, 급여 종류별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의 결정, 빈곤실태 조사 및 생활보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급여별 누락·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안 제20조).</p> <p>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p> <p>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송부하되, 소관부처의 급여에 한정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p> |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⁷⁾

가) 최저생계비 정의 규정의 문제

- 법률안 주요내용에는 생략되었으나, 개정안 제2조 및 제6조 제1항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 제2조는 최저생계비의 정의에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공표하는 금액”을 “제6조에 따라 공표하는 금액 등”으로 변경하고 있고, 개정안 제6조 제1항은 최저생계비 결정 방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 결정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결정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있음.
- 먼저 개정안 제2조에서 “공표하는 금액 등”으로 규정할 경우 최저생계비의 정의가 불확실해짐으로써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음.
-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최저생계비의 단일 공표권자로 지정하였는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이 복수의 공표권자로 변경하

7) 이하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2013. 6. 9.)와 입장이 같음.

는 것은 개별급여별로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것임.

- 개정안과 같이 복수의 공표권자가 개별급여별로 최저생계비를 발표하는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 생계비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각 수급권자들의 상황에 따라 각 최저급여의 합산액이 지급될 것인 바, 이는 오히려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더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특히 수급권자를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나누어 별도의 급여체제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뿐만 아니라 현행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 권한을 박탈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개별급여 소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전속시킴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편의에 따라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었음.

나) 최저생계비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의 분리 문제

-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이자 급여 수준의 기준임.
- 그러나 개정안 제5조는 수급권자의 범위, 즉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삭제하여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함.
- 또한 개정안은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5조 제1항과는 달리 소득인정액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장관의 지침에 따라 생계급여 수준이 좌우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제도의 통합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기초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제 및 조정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개정안 제7조 제2항은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폐기하고 최저생계비와 급여 수준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함.

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변경의 문제

- 개정안은 제20조 제2항 중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무직 중심의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최저생계비 등 복지 서비스가 행정부의 방침에 좌우될 위험이 큼.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TF

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53) | 2013. 1.18. | 백재현 (민) | 가.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유효한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민법」 제 781조제4항에 따른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고,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 23조제2항 신설). |

2) 검토의견: 입법 적극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개정안은 입양특례법 시행 후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아유기의

이유는 매우 다양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이 가장 크다 할 것인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아동유기의 원인을 입양특례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북미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동이 출생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들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자동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최근 2011년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자동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음. 이는 철저히 아동인권의 차원에서 아동의 비밀 입양, 아동 매매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임. 입양허가제 하에서 출생신고는 반드시 필요하고, 출생신고 제도는 아동의 생존권 및 출생의 기원을 알권리 차원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 더구나 출생신고 제도는 개정 입양특례법에서 갑자기 등장한 제도가 아니라, 구법에서도 당연히 존재했던 제도이며, 다만 구법에서는 편법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기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뿐임.
-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 해결책이 아동의 출생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봄. 출생의 기록은 남기되, 국가가 기록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분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현 제도 하에서도, 입양이 성립되면 아동은 친모의 신분기록(가족관계 증명서등)에서 삭제되어 기록에 남지 않음. 출산의 비밀은 신분등록기록의 관리와 열람에서 철저히 개인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 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미혼모가 PC방이나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할 경우 1주일이라는 숙려기간 동안 머물 곳을 찾기 어려워 영아유기를 하고 있다며 숙려기간 폐지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음. 개정안의 이유처럼 청소년 미혼모가 1주일간 머물 곳이 없어 영아를 유기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청소년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일 것임. 더구나, 청소년 미혼모의 영아 유기가 입양 숙려기간 1주일 동안 머물 곳이 없어 발생한다는 진단도 동의하기 어려움. 청소년 미혼모의 영아유기는 너무도 복잡한 현실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것임.
- 숙려기간의 도입은 개정법 시행 전 출산도 하기 전에 이미 친권포기각서, 입양동의서 등 입양관계 서류를 다 갖추어 놓아야만 입소가 가능했던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의 폐해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입된 것임. 1주일의 숙려기간은 자녀를 입양 보낼 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며,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최소한의 시간조차 없이 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 입양 취소, 파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숙려기간이 도입된 것임.
-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장애인 복지, 장애아동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이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봄.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개선을 포기하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국내입양 우선 추진 정책조차 포기하여 원칙적으로 해외로 입양을 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이 개정안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지도 못한다고 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연구팀)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33) | 2013. 5.31. | 정부 |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 세분화(안 제10조제3항) 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및 제90조) 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 라.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 등의 겸직금지 규정 마련(안 제77조제4항) 마. 과태료, 업무정지의 중복 제재 개선(안 제92조제3항) |

2) 검토의견 : 일부 찬성 / 일부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찬성 내용>

- 본 개정안 중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여 과거 의료인이 부당하게 의료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문제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개정안에 찬성함.

<반대 내용>

- 본 개정안 중 보험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환자의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안에 반대함.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의견과 같은 입장임을 밝힘)
-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관여·통제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사유로 그동안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및 직접계약이 금지되었으나, 본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법안임. 이는 결국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의료기관과 보험업의 결합은 환자 정보 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였던 외국에서조차 이를 철회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임.
-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영리기업인 보험업이 의료기관과 결합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 의료기관-보험회사의 직접계약 및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행위 허용은 현재 미국의 상업적 의료제도가 현재와 같이 민영화되었던 첫 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비록 본 개정안이 유치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임. 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영리목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이 역시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초래할 것임.
- 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법 등에서의 처음에는 외국인에 한정되어 허용되었던 내용이 내국인까지 확장되었던 경우가 흔함. 즉 처음에는 보험회사의 환자알선 유치행위가 외국인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환자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에 더하여 본 의료법 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같은 날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연동되어 있음. 본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호텔업’이라는 관광진흥법 상의 숙박업을 신설하고 있고 이 의료호텔을 의료기관과 환자 유치업자인 보험회사까지 개설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기관이 자신의 고유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위락시설인 호텔업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함.
- 더구나 본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의료호텔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를 등한시 할 우려가 큼. 또한 의료호텔업은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수치료, 아로마 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가 의료호텔업에 부수되어 행해질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공급의 부정적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의료호텔업’은 내국인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앞서 밝힌 의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보험업이 ‘의료호텔업’을 개설하게 되면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유치알선이 가능해 지는 것이며, 이는 전면적인 보험-병원 카르텔 허용의 효과가 나타남.
- 한국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의료호텔업’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임.
- 따라서 보험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호텔업’ 시행령을 동시에 입안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영화반대TF

4.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1903596) | 2013. 2. 4. | 정부 |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안 제4조)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안 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안 제6조) 라. 보건소의 기능 명시(안 제11조)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4조)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본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로 한정하여 보건소의 업무에서 진료서비스 제공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임.
- 다만, 보건소 역할을 강화하고 그 책임주체를 명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공립의료원 등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전국적인 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채 또 하나의 산재된 보건의료기관을 낳게 한다는 우려가 있음.

- 또한 현행 보건의료에 관한 입법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⁸⁾, 공공보건의료 설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⁹⁾,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등이 있는데, 각 법률은 ①사업내용(질병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② 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보건의료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결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등) 등을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음.
- 위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향하는 통합적인 질병관리는 결국 공공의료의 강화로 해소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입법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법률에서 공공의료와 그 책임주체를 산재해 놓음으로써 비용부담 등 그 책임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서로 떠넘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원인임.
-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에 나타나듯이 국가재정법등 보조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라면 실효성 없는 법률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위 지역보건법이나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하기 보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 일 것으로 보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영화반대TF

-
-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IX.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56) | 2013. 4. 9. | 김한표 (새) | 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도입 - 천연가스반출입업 도입 - 반출입업에 대한 신고제 채택 - 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 - 반출입업자의 시설·설치 이용 나.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제한 완화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해외 판매,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다른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등의 허용 다. 직수입자의 반출입업 경영 허용 및 타 직수입자 판매 허용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하에서도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보세구역을 지정 받으면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 천연가스반출입업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히, 현재의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하여금 천연가스반출입업의 겸업을 허용할 경우 직수입자의 도입물량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에서 직수입자의 반출입업 허용 물량까지 직수입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전체 직수입 물량규모는 매우 유동적이 되므로 사실상 국가 전체의 통합적 수급관리가 불가능해짐. 또한 이와 같은 겸업 허용은 도입·도매 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실상의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의미함.
- 한편, 현행 제도 하에서도 직수입물량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및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타 직수입자와의 물량 교환이 허용되어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은 충분히 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첫째 다수의 직수입자가 난립하게 된다는 점, 둘째 직수입 대상이 중소규모 발전용·산업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셋째 현

행법상 직수입자는 LNG의 국제시장상황에 따라 직수입 물량을 조정할 수 있어 직수입자의 기회주의적 도입 행태가 예상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천연가스의 국가적 수급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국가적 수급관리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 허용은 사실상 우회적인 신규 가스도매사업자의 등장 또는 천연가스수입 종합상사 허용을 의미함.

- 이처럼 직수입의 확대는 국가의 구매력 분산을 의미하고 결국 도입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LNG 도입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요패턴 악화로 도시가스 수요자의 LNG 저장비용 추가 부담 발생과 그로 인한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함.
- 나아가 직수입 확대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저렴한 세일가스의 도입기회를 상실하여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본 개정안은 표면적인 제안이유와는 달리 사실상의 가스산업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수급안정과 가스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법률안이 아니라,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에너지 독점기업의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입법으로 판단되는 바, 그 입법에 반대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영화반대TF

X. 안전행정위원회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53) | 2013. 10.11. | 진선미 (민) | - 개정법률 시행 후 4년 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 함 - 종전의 진실화해위원회 성과를 반영해 진실규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권을 강화함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 상황의 문제점

- 2005. 5.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화위법”이라 함)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가 설립되어 이후 4년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수많은 인권 침해 및 의혹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명예회복, 형사 재심, 법원을 통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과를 남겼음
- 그러나 신청 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 기간, 권한의 제약으로 인하여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음(2010. 11. 25. 현재 신청된 사건 중 진실규명 불능사건이 528건, 각하 1,729건 등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들이 다수였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음. 미신청된 사건까지 감안하면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 중 극히 일부만이 규명된 상황임)
- 무엇보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여전히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이 산적해 있고,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 및 추가 진실규명 작업이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음.

○ 주요 입법방향

- 종전 진화위법이 조사기간 종료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바, 진화위법 개정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충분한 기간 동안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함. 조사기간은 종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경험에 비추어 최소한 4년 이상이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권한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던 만큼,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권한을 현실화하여야 함. 예컨대, 1) 한국전쟁 전후 집단학살 사건 등의 경우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2009년 이에 대한 정책마련 및 특별법 제정 권고도 있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방법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고¹⁰⁾, 유해 발굴 및 보관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2) 과거사 사건은 오랜 시간의 경과 및 증인, 증거의 절대적 부족으로 국가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청문회, 진실화해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 허위 증거 제출 등에 대한 처벌권한 규정 등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함.
- 종전 진화위법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단기로 제한함으로써(법 제19조 제2항), 상당수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화해라는 진화위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인바, 신청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음.
- 종전 진화위법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이후 명예회복 조치를 추상적으로 언급할 뿐 배상과 보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 희생자의 배상·보상 문제가 법원에 맡겨진 관계로 진실규명 이후에도 희생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는데, 소송상 입증의 어려움은 물론 최근 법원이 지연손해금의 대폭 축소, 진실규명 결정 이후 소 제기 기간 제한 등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보임에 따라 같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배상과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명예회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화위법 개정과는 별도로 배상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
- 진실규명 후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과거사재단’의 설립이 필수적인데, 종전 진화위법은 정부의 기금출연을 임의규정으로 정할 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과거사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어 진실규명 후 사후조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 설립을 의무화하고 그 설립기한을 특정하며, 재단의 활동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항을 두어야 함.

○ 제출 법안 주요 내용

- 위 개정법안은 아래와 같이 입법방향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진실

10)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매장지 기초조사를 통해 전국 168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39개소를 우선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3년간 13개 매장추정지를 발굴한 결과 1,617구의 유해와 5,600여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그러나 유해발굴 이후 유골 유해도 달리 안치할 곳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발굴된 유해는 현재 충북대학교 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되어 있으며(2016년 7월까지 안치 계약), ‘고양 금정굴’에서 유족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안치되어 있던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청아공원으로 옮겨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과거청산 추가과제들”, 2013. 9. 17. 국회토론회).

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한 진실규명활동이라는 국회의 존재 의의에 부합하는 법안으로서 입법을 촉구함.

-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법률 시행 이후 4년으로 함(안 제25조 제1항).
- 진실규명의 목적과 범위 구체화 : 진실규명의 목적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로 조문을 수정하고(안 제1조),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권한 강화 :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함(안 제19조).
-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2조).
-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보상특별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XI. 여성가족위원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890) | 2013. 5. 9. | 남윤인 순 (민)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신분상 정보공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명칭 변경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가 아닌 증명서의 일부(기초사항증명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있어 공개되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

2) 검토의견: 보완 후 입법 적극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한부모 가정과 입양부모 가정 등에서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부모 관계와 입양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친양자관계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점, 배우자에 관한 사항은 혼인관계 증명서로 따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 목적별 기재 방식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점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관계 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입양특례법 제 36(입양정보의 공개) 제 2항은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개정안의 친양자관계 증명서의 발급 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이 개정안에서 개정의 핵심은 “기초사항 증명서”를 원칙적인 증명서로 하고, 현행법과 같은 증명서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전부증명서로 대체하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고려에 따른다면, 굳이 “기초사항증명서”를 법제 15조의 2로 추가하기 보다는 현행법 제 15조를 개정하여 증명서에 기록되는 원칙적인 내용을 “기초사항증명서”의 내용과 같게 하고, “전부사항증명서”를 예외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받도록 하는 형태의 체계가 바람직해 보임. 즉, 법제 15조의 각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개정안 제 15조의 2의 “기초사항증명서”로 대체하고, 법제 15조의 2를 신설하여 현행법상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전부사항증명서”로 하여 “기초사항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타당하다고 봄.

4) 담당 검토 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연구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6804) | 2013. 9. 12. | 남윤인 순 (민) |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예방·방지와 성매수 대 상자의 보호·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내용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 인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 생계지원 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시설 중심이 아닌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지원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관 거버넌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성매매방지팀)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707) | 2013. 4.29. | 전정희 (민)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가 범람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498) | 2013. 6.14. | 류지영 (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징역 1년이하--> 징역 3년이하)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

2) 검토의견 및 주요검토내용

가) 의안번호 1904707(전정희 의원): 입법 촉구

- 주요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아청법 개정안
-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이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다만, 포상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나) 의안번호 1905498(류지영 의원): 입법 촉구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조정하도록 한 아청법 개정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보다 성매매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폭력방지팀)

4. 양육비 관련 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양육비선지급법 안 (1900285) | 2012. 6. 22. | 김상희 (민) | <p>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함으로써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p> <p>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4조).</p> |
|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 (1900416) | 2012. 7. 2. | 우윤근 (민) | <p>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으로부터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비혼모 또는 비혼부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p> <p>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대지급한 경우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2조).</p> <p>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비혼모 또는 비혼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지급청구를 대행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p> |
|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2012. 9. 7. | 서영교 (민) | <p>가. 이 법은 비혼, 이혼 등 그 밖의 사유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p> |

| | | |
|-----------|--|---|
| (1901664) | | <p>대신하여 양육비를 선 지급함으로써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조).</p> <p>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p> <p>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9조).</p> |
|-----------|--|---|

2) 검토의견: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이혼이나 비혼 등의 사유로 부모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원래의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양육 지원이 될 수 있음. 또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임의지급도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8대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던 양육비 대지급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안 명이 다른 3가지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3가지 법안의 내용은 거의 유사함. 다만 최초 발의되었던 1. 양육비 선지급 법안은 비혼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놓지 않고 있고, 2.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비혼인 경우만을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행하는 방안까지 규정하고 있고, 3.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비혼, 이혼 등 그 밖의 사유로 일방이 양육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세 가지 법률안을 종합하여 이혼의 경우 뿐 아니라 비혼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비혼의 경우 인지청구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행하는 방법 내용까지 포함하여 대안입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연구팀)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1903818) | 2013. 2. 21. | 민현주 (새) | <p>가. 이 법은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p> <p>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 하에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며,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에 원장 1인과 사무국을 둠(안 제7조제3항).</p> <p>라.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조사·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보험정보,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p> <p>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9조).</p> |

2) 검토의견: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법의 입법목적에 대하여 공감하기는 하지만, 양육비 대지급, 선지급 법안은 복지의 관점에서 한부모 등의 양육비 청구권자를 원조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선지급을 한 후, 양육비 지급의 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내용인데 반하여, 이 법안은 국가 주도로 새로운 특수 목적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기존 법 체계를 고려할 때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보임.
- 이 법안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률 구조 공단 등의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면도 있으며, 양육비 청구와 집행과 관련하여

서만 특별한 법률사무 대행기관을 국가가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기관의 존재의의를 찾기 어려움. 특히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단순한 법률사무 대행기관을 넘어서서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채무불이행자에 비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연구팀)

6.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04964) | 2013. 5. 14. | 남윤인 순 (민) | 「형법」 및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회복과 보호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재 국내에서 인신매매피해가 확인되지 못하는 이유 및 인신매매피해자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자신의 인신매매피해를 밝히려고 할 경우(수사기관 신고, NGO 연계, 구조 요청 등) 인신매매범죄 처벌의 불확실성 및 신고자 자신이 오히려 범죄자로 처벌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는바, 본 법안은 한국에서 파악된 인신매매 실태를 바탕으로 인신매매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으로 보임.
-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이고 실제 국내에서 확인된 인신매매피해자의 다수는 외국인 피해자인바, 현재 노동을 위한 이주가 활발하고, 현대 인신매매의 경향이 강제력(폭행, 협박, 위력, 납치)을 이용하기보다는 고용조건이나 그 내용을 속이는 기망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 보고되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도 상당수 외국인인 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는 본국으로 즉시 추방하지 않고 체류를 보장하는 것임.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체류보장 방안이 없는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꾀할 수 없는데, 본 법안은 외국인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가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종료한 후에도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

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국내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23조).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성매매방지팀)

XII. 정무위원회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1902602) | 2012. 11.15. | 서영교 (민) | <p>가. 대부업자에게 허용한 특례금리제도의 폐지</p> <p>(1) 대부업법자에게 인정되던 특례금리제도를 폐지함.</p> <p>(2)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제8조 제1항). 단, 단서에서 부대비용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내용은 제한금리를 탈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함.</p> <p>(3)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는 규정도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제8조 제2항).</p> <p>(4) 대부업자에게 특례금리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의 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11조는 모두 폐지함.</p> <p>나. 여신전문금융기관에도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준용</p> <p>(1)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인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 준용함(안 제15조 제1항).</p> <p>(2)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15조 제2항).</p> <p>다.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p> <p>(1)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3항).</p> <p>(2) 이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 제15조 제4항 내지 제5항은 각 삭제함.</p> <p>라.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p> <p>(1)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칙 신설함(안 제</p> |

| | | | |
|--|--|--|--|
| | | | 19조 제1항 제4호). (2) 대부업자에 대한 유사한 처벌규정인 현행법 제19조 제2항 제3호는 폐지함. |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금융권의 숙원사업으로 사금융시장의 양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것임. 그런데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금리를 인정할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도 없고 여신금융기관이 이자제한법보다 훨씬 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함. 즉, 여신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함.
-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은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을 외국자본의 약탈시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등록대부업자의 감소추세 및 일본계 대부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에서 보듯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특혜금리는 더 이상 사금융 시장의 양성화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은 일본의 대금업규제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인데, 일본 역시 사채업 양성화를 유도하면서 그 특혜금리를 점차 낮추어 오다가, 2007. 6. 13. 대금업자의 경우에도 연 20%를 넘는 금리로 이자계약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가하고, 아울러 제한 이율을 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함.
-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고금리로 인한 개인파산 및 자살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많은 대부업자들이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박 등 강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민생침해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바, 대부업체의 폭리와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위 개정안의 통과를 제안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¹⁾ (1906699) | 2013. 9. 5. | 박대동 (새) |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上限)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일몰시한을 삭제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자제한법」 제7조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되어 서민계층에게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¹²⁾.
- 나아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도 연 30%에서 20%로 인하해야 마땅함.
- 그런데 오히려 대부업법상의 특혜금리의 일몰시한(부칙<제9344호,2009.1.21.>제2조 제1항¹³⁾)을 아예 삭제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려는 본 법률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팀)

-
- 11) 참고로 정부가 제출 예정인 같은 이름의 법안은 대부업체의 특혜금리(연 39%)를 향후 5년 간 더 유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법안처럼 특혜금리를 계속 인정해 주려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할 법안임.
 - 12)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 이미 발의된 상태이고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2011. 11. 15. 제안 19026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발의)
 - 13)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906272) | 2013. 8. 5. | 정부 | <p>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p> <p>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p> <p>2)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직무관련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 <p>나.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p> <p>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p> |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905164) | 2013. 5. 28. | 이상민 (민) | <p>가. 부정청탁의 금지</p> <p>1) 부정청탁 정의(안 제2조제5호):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p> <p>2) 부정청탁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당사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p>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안 제33조 제2항 제2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

| | | | |
|------------------------------------|--------------|---------|--|
| | | | <p>나. 금품 등 수수 금지</p> <p>1)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제32조 및 제34조 제4항 제1호):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금지(안 제11조·제32조 및 제34조제4항 제1호):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직간접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형벌로 제재</p> |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905098) | 2013. 5. 24. | 김영주 (민) | <p>가. 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제3자를 통해 그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함(안 제8조 및 제9조).</p> <p>나.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p> <p>다. 공직자는 공직자 자신 또는 친족 등이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등에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p> <p>라.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p> <p>마.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p> |

2) 검토의견 : 정부안 입법 반대 / 원안 취지의 이상민의원안, 김영주의원안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만연한 공직사회의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

청탁행위를 금지하여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기존 법체계 내의 한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했던 부정·부패 사건을 규제하고 사전 통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의 고양 및 국민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위 법안은 필요하며 타당함.

- 2012. 8.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원안은 ▲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무부에 의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안이 크게 훼손된 정부안이 제출되었음.
-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직무를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한다’고 하여 공직자의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하려는 원안을 대폭 후퇴시키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적절하려는 법안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음.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법 적용상의 한계도 문제시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안이 청렴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오히려 이러한 정부안으로서는 그 동안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공직 부패 사건의 범망을 교묘히 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일명 ‘스폰서 사건’식의 부패를 방지할 수 없음.
- 이미 각 국에서는 위 법안과 유사한 법을 시행하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음. 독일은 형법 제331조(이익수수죄)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에 정부 외의 출처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공공부처부정행위법(PBCPA 1889)’과 ‘부패방지법(PCA 1916)’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의 수수 및 공·사익간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규제를 발전시키면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민적 여망을 담아 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안을 담은 민주당 의원입법을 촉구 하고,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본래 입법제정 목적이 훼손된 정부 법안의 입법은 저지하여야 함.

4)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4.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80) | 2013. 5. 23. | 여상규 (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하여 외국투자자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증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 유할 수 있도록 용함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지주회사 체제는 출자단계가 내려갈수록 일부만의 출자만으로 지배력이 확장되는 문제가 커지는바,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100% 증손회사가 아닌 한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증손회사의 성립여지를 차단하고 있음.
- 외국(영미, 독일 등)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은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 이상만을 소유하여도 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 공정거래법은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 중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 이상만 소유하면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우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가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20%만 가져도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하고,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 20%만 가져도 손자회사까지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른 외국에 비하여 지배에 필요한 지분 비율이 낮고 손자회사의 지배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재벌의 지배력 확장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인투자자와 합작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즉 자회사 단계에 20% 이상만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얼마든지 합작투자를 할 수 있음.
- 현재 재계에서 문제삼고 있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자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자회사와 합작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빌미로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입법에 반대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정경쟁팀)

XIII. 환경노동위원회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49) | 2013. 5.31. | 김성태 (새)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단계적 적용, 예외적으로 6개월 동안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 3개월에서 1개월, 6개월로)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44) | 2012. 9. 4. | 이완영 (새)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단계적 적용, 예외적으로 3개월 동안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 3개월에서 1개월, 1년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 |

2) 검토의견: 입법 반대 및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안 중심으로 검토)

-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입법화 시도가 있었고, 노사정위원회 또한 2012. 3. 5.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발족하여 2013. 7. 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하여 위 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마련하였음.
- 법개정의 취지가 OECD 회원국 중 최장 노동시간의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권,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면 거래하기식의 법 개정은 있을 수 없음.
-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제50조, 제53조)과 이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이미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해석하려는 법원의 태도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고집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왜곡해왔음. 장시간의 연장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휴일근로시간을 당연히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있고, 독일과 벨기에 등은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위 발의안과 같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면서도 사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김성태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완영안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을 추진하고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여 일정기간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를 허용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은 개악임.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은 노동시간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노동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큰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사실상 노사 합의만으로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되어 실노동시간 단축효과가 반감됨.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논란이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족함.
- 위 개정안들은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극복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제안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등으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노동강도의 강화와 임금 불안정에 노출시키는 방안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둠으로써 스스로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음.
-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최저임금 현실화,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 중소기업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전체 노동자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서 (약 40%)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해서는 위 특례업종에 대한 폐지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근로시간 특례 업종 제도는 당분간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공익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엄마 가산점’ 도입)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074) | 2012. 12.11. | 신의진 (새) |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이 법률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이 국가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의 제한은 두고 있음(안 제17조의2제5항 신설). 그리고 이렇게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17조의2제6항 신설).
- 현재 우리사회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2011년 기준 기혼여성의 19.3%가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08만 4천명으로 57.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15~29세는 24만명(12.6%)으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남(통계청,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 그 주된 사유는 결혼(47.0%), 육아(28.7%), 임신·출산(20.0%) 순
- 위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재취업을 촉진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경력단절 예방이 아니라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극소수의 재취업 여성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방식이며, 무엇보다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노동자들,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 가족형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음 ; 차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마치 ‘시혜’하듯 가산점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 될 수 없음

- 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와 같은 ‘가산점 부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제안되고 있는 「근제대자 가산점제」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대표발의한 의원 스스로 “두 가지 가산점을 모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제안되었다는 점에 있음
-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며,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는 정책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빈곤과 여성노동팀)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5119) | 2013. 5. 24. | 한명숙 (민) |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신고의무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처 강화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6767) | 2013. 9. 10. | 노웅래 (민) | 사업주의 신고·근무장소 변경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모집·채용 과정의 성희롱 방지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7117) | 2013. 10. 2. | 김광진 (민)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1903683) | 2013. 2. 13. | 오제세 (민) |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 신설). |

2) 검토의견 : 보완 후 입법추진

3) 주요 검토내용

- 현재 계류 중인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으로

약칭) 개정안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성희롱 구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한 성희롱 법제화가 20년의 시행기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나 문제점이 남아 있음 ; 그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① 고객 등 업무관련자에 의한 성희롱과 특수고용종사자 등에게 가해자는 성희롱은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 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 제재가 없다는 점, ③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식이 벌금이 아닌 과태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만 금지하고 있어 성희롱 피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⑤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⑥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성희롱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개정안 중,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신고의무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처 강화를 시도하고,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은 사업주의 신고·근무장소 변경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모집·채용 과정의 성희롱 방지하는 등 개선안을 담고 있으며,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하고,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은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어, 모두 기존 법제의 한계를 일부나마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성희롱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 방법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보면, 각 개정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성희롱 신고자(피해 고지자)에 대한 작업중지권(유급휴가 부여 등)·근무장소 변경과 신속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사의무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예시] 제00조(성희롱 발생 신고시의 조치) ① 누구든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에 대한 조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자는 조사 내용 및 그 결과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때,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자에게 그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성희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피해자 등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피해자 등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 2. 가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⑥ 전 5항의 규정은, 피해자가 조직 내부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경우에도 같다.

제00조 (성희롱 확인 시의 조치) ①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해고, 정직, 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등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의 유급 휴가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노동사무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 참고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성희롱 피해자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평법 영역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KWDI, 젠더와 입법 Brief 2013년 제1호)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빈곤과 여성노동팀)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자성, 사용자성 확대)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64) | 2012. 7. 3. | 심상정 (정) |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확대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2) 검토의견 :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근로자성의 확대 : 특수고용 직종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며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특수고용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에 착

안해 기존의 일반고용 노동자의 업무를 특수고용직 업무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고용형식의 다변화 추세와 더불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양산시킬 위험을 높이고 있음. 법원과 행정실무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 온 점 역시 특수고용직화를 부추기고 있음.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준과 인권기준의 핵심 내용임. 판례 역시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게 보고 있으며, 학계의 다수의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소한 노동3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규정을 통한 보편적 노동3권 보장은 가장 폭넓게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임.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규정도 그에 맞추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성 확대 : 간접고용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 회피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로 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제도임. 따라서 ‘직접고용 원칙’이라는 노동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상시업무 간접고용 금지’의 현실적인 입법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장 보편적인 입법대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임.

○ 위 발의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노동자성 확대

| |
|---|
| <p>노조법 제2조 제1호 (앞부분 생략)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p> <p>가. <u>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u></p> <p>나. <u>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u></p> <p>다. <u>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자.</u></p> <p>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앞부분 생략) <u>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등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u></p> <p>제5호 (앞부분 생략) <u>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등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u></p> <p>제6호 <u>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2조제2호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보는 자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u></p> <p>제7호 <u>사용자가 각 노동조합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행위</u></p> <p>제81조의2(부당노동행위 간여 금지) ① <u>누구든지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u></p> |
|---|

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1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2.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3.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해 조합원들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0조(벌칙) 제29조의6·제44조 제2항·제69조제4항·제77조·제81조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 사용자성 확대

노조법 제2조 제2호 (앞부분 생략)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동조 제3호 (앞부분 생략) 동종 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규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로 본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창구단일화)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64) | 2012. 7.3. | 심상정 (정) |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삭제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삭제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삭제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삭제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삭제 |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노조법은 복수노조 도입 시기를 2011년 7월 1일로 정하고,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에도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

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봉쇄해 실제로는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또 노동조합이 자율교섭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용 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 육성책으로 악용될 여지도 높다고 할 것임.

-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조합원 산정,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등 대부분의 사안을 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부재나 무리한 법률해석의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발전적 검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분쟁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의 비대화를 가져와 행정당국에 의한 지배개입과 자주성 침해 소지를 증대시킴.
-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¹⁴⁾를 피할 수 없음. 이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과 노동3권이 갖는 자유권적 요소(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이와 연계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봉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 정부는 이와 같은 위헌성 논란에 대해 ‘창구단일화 제도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¹⁵⁾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교섭방식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왜곡한 것임. 국제노동기구는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 ‘교섭방식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노사관계와 노사문화 등에 따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과 함께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은 해당 국가의 노사문화와 교섭관행 등에 따른 교섭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의 경우 ‘노사문화와 교섭관행’과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라고 볼 수도 없음. 복수노조 허용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할 뿐 정부와 사용자가 자신들의 권한을 양보하거나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님. 또한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¹⁶⁾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받게 되어 복

14) “일정한 경우 과반수노조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면서 소수노조의 교섭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또한 일정비율 이상의 노동조합만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교섭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도 사용자의 처분에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제한인 것이다.”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김기덕, 2011. 6. 9.

15)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1.6. ILO 100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약 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에 대해 “ILO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ILO는 한국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평가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노조 허용의 의의가 크게 훼손되었음.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고, 복수노조가 자율교섭하는 형태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함(노조법 29조, 29조의2~5 모두 삭제).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6.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900012) | 2012. 5.30. | 이한구 (새) | -사내하도급근로자 규정 -여러 노동조건을 포함한 사내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급사업주 교체시 고용 및 노동조건 유지의무 -차별시정절차 및 징벌적 보상명령 도입 |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901435) | 2012. 8.30. | 안효대 (새) | -거의 유사함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안 중심으로 검토)

-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 사용자책임 회피 수단, 노동조건과 고용에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제시된 사내하도급법 발의안의 내용은 스스로 내세운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ILO 등이 제시하는 국제기준 등은 직접고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함. 따라서 간접고용은 폐지 또는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지 확대·양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16)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자율교섭제도이다.

- 사내하도급법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방안이라는 입법 취지나 목적과 달리 현재의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여 간접고용의 제약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수단)를 사용자에게 쥐어주는 것에 다름 아님. 파견법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대상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내하도급법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제한은 무의미해지고 전산업에 걸쳐 간접고용이 자리잡게 될 것은 명약관화함. 이러한 점은 위 발의안의 정의 규정(제2조)과 사내하도급 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한 조항(제4조) 등을 보건대 사실상 근로자파견과 다를 바 없는 고용형태를 사내하도급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확인됨. 따라서 사내하도급법의 발의안은 폐기되어야 함.
-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제19조 단서),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무교육이나 원사업주 근로자와의 공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제23조),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제21조 제1항) 등은 도급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항들로 원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길을 터주고 도급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통로를 부여하고 있음.
- 차별시정절차 등은 원사업주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없어서 비교대상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구제 가능성이 없고, 차별시정절차는 시간, 비용, 증명의 곤란 등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됨. 현재의 기간제법과 파견법상의 차별시정절차가 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음.
- 도급계약기간의 장기화와 갱신을 통한 고용보장, 원사업주 신규채용시 사내하도급노동자 중 적격자 우선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력 규정에 불과하고(제4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사업주 교체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연속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고(제6조)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이 실효성도 없음.
- 사내하도급법은 파견법상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규정, 파견기간 제한 완화, 불법파견시 사용자 책임 완화를 꾸준히 요구한 자본의 목소리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담아낸 입법안임. 현재의 사내하도급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안정과 정당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간접고용의 원칙적 금지에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점을 명문화하고,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을 의제하는 내용으로의 파견법 개정, 불법근로자공급의 경우 직접고용을 의제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해 오히려 직접고용의 대원칙을 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안 일자 |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47) | 2012. 7.12. | 은수미 (민) |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규제하기 위해 파견법에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파견기간(2년) 초과 및 불법 파견시 현행 고용의무 규 정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개정 |

2) 검토의견 : 수정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파견법이 존속하는 동안 위장도급으로 인한 불법파견의 남용과 그 폐해를 막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도급과 파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직업안정법에 도입하여 도급을 위장한 근로자공급 내지 파견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도급을 위장하여 근로자공급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을 받은 사업주와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그 근로조건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미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차별을 차단하도록 함.
- 불법파견시 직접고용간주 조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차별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달하지 않도록 법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을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것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게 하고 최소한 법원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간접고용은 본질적으로 중간착취를 내포하므로 중간착취 배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이어 ‘상시적 업무에서의 직접고용의 원칙과 간접고용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매우 적절해 보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